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별도의 상이등급으로 판정〉
■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9)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별도 상이등급으로 판정	3
2. 부칙	13
※ 참고자료	15

I. 제안경위

1. 제안자 : 고동진의원 등 11인
2. 제출일 : 2025. 3. 25.
3. 회부일 : 2025. 3.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9년 6월에 벌어진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교전 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훈부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과 국가유공자의 ‘비해당’ 판정을 받아, 국가가 제1연평해전의 영웅들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공로를 잊었다는 질책의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음.

살펴보면, 1999년 당시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상황이었음(국내의 경우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PTSD를 주목)과 동시에,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상 적극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어려웠던 현실, 또 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 장병들이 PTSD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은 지금까지 ‘입법 및 사회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수행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한 ‘기존의 획일화 및 경직화된 상이등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직무의 성질 및 상황, 현재 시점의 사회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 필요한 소급적용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6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별도 상이등급으로 판정

- 개정안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이를 입은 경우, 당시 직무의 성질 및 상황, 현재 시점의 사회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6 제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6(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6조의6(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수행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u>

	<u>우에는 제6조의4에도 불구하고, 당시 직무의 성질 및 상황, 현재 시점의 사회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다.</u>
--	---

□ 현행법은 부상의 정도와 후유증의 심각성 등을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1급~7급까지 나누고,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¹⁾

○ 시행령은 7개의 등급 중 1등급과 6등급은 3개의 등급으로 세분화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음.²⁾

□ 현행법상 공상군경 등을 국가유공자로 등록·결정하기 위한 절차³⁾는 먼저, 상이를 입은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보훈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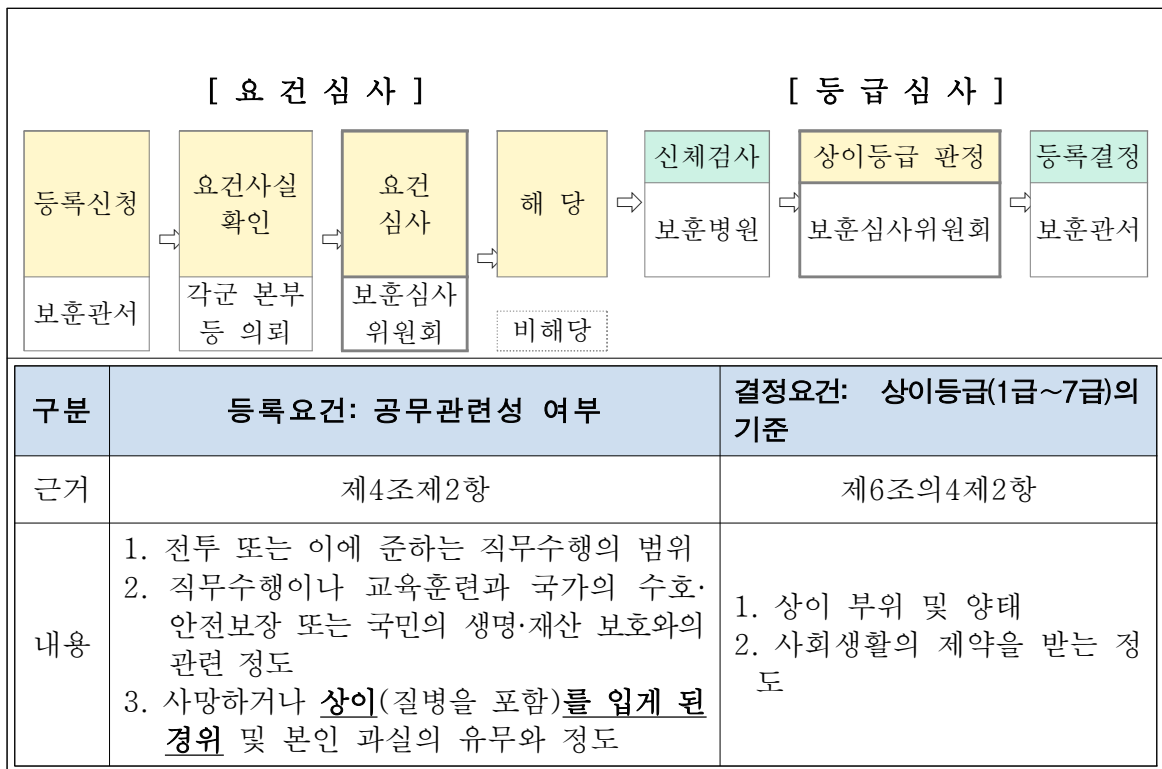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구분 중 1급과 6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한다.
 ②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3) 참고자료 1: 국가유공자 등록·결정 절차

위원회⁴⁾에서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 정도 등 공무관련성을 심사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되는지를 결정(요건 심사)하고,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 상이등급 심사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1급~7급)을 판정한 후, 관할 보훈관서가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로 결정(등급 심사)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등록·결정 절차 >



-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심사”는 전투 또는 공무 수행과 상이(傷痍)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시행령의 요건 기준·범위 등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임.

4) 참고자료 2: 보훈심사위원회 현황

- 정신질환 상이의 경우, 외상의 심각성(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 진단 시기, 현재 일상생활의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요건심사” 단계에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정신장애 발생 당시의 의무기록, 최근의 외래 또는 입원기록, 진단서 등이 필요하며, 요건 불비 시 “요건심사”에서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됨.

<상이등급 기준(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3 및 시행규칙 별표4) 발췌>

4.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12) 정신장애로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무기록 사본, 장애 발생 당시의 의무기록, 외래기록(최근 2년), 입원기록(최근 1년간의 의무기록, 간호기록과 투약 내역), 현재 환자의 진단과 상태 및 호전가능성 여부가 기재된 진단서, 임상신경 심리검사 보고서, 생활기록부(첫 신체검사 시에만 첨부)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3) 기질적 정신장애로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상이 판정을 받기 전까지 1년 이상 충분하고 성실하게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하고, 뇌 영상검사와 심리검사를 통하여 기질성 유무가 확인되어야 한다. 14) 정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또는 취업 제한의 정도의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장애 평가도구[간편정신평가척도(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총괄기능평가척도(Global Assessment Function)]를 활용할 수 있다.

- “등급 심사”는 “요건 심사”를 통과한 후에 행해지는 절차로서,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신체 상이부위별 장애 증상과 기능 손실의 정도를 판단함.
- 눈/귀·코·입/흉터/정신·신경/흉복부/체간/팔·손가락/다리·발가락 등으로

신체 상이부위를 구분함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한 모든 정신질환의 경우, 노동능력 상실 정도(정산장애 평가도구 등 활용)를 확인하여 등급을 부여하는바, 현재 정신과 등 전문의가 일상생활의 제약 등을 종합 고려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을 상이등급으로 판정하고 있음.
- 상이등급 구분 및 판정과 관련하여서는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분야 전문의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⁵⁾, 보훈심사위원회⁶⁾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전문의 등이 참여하여 결정하고 있음.

○ 정신질환으로 인해 등급판정을 받은 건수는 최근 5년간 245건임.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① 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6(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상임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위촉한다.
1. 국가보훈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로서 의사의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5.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연도별 정신질환 등급 판정 현황 >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급1항	—	—	—	1	—
1급2항	—	—	—	—	—
1급3항	—	—	—	—	1
2급	—	—	—	1	—
3급	—	—	2	—	1
4급	2	3	6	5	4
5급	5	6	12	22	15
6급1항	5	2	8	9	7
6급2항	2	9	14	7	11
6급3항	—	—	—	—	—
7급	6	13	24	28	14
합 계	20	33	66	73	53

※ 상이등급 신체검사(신규, 재심, 재확인, 재분류)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한 정신장애로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자료: 국가보훈부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일반적으로 전쟁, 재난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충격을 경험한 후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을 지칭하는 용어로, 다수의 국민들이 재난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우울, 공황장애, 불안 등의 증세를 지속적으로 호소하면서 질병의 일종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음.

<천안함 폭침 및 제1·2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도발 국가유공자 등록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현역 복무	예 비 역				
			소계	국가유공자 (전몰·전상) 등록 신청자			미신청
				등 록	미등록	심사 중	
천안함 폭침	105 (51)	21	81 (51)	79 (51)	1	1	3
제1연평해전	32 (11)	3 (1)	16 (4)	3 (1)	1	12 (3)	13 (6)
제2연평해전	29 (9)	4	23 (9)	21 (9)	2	1	1
연평도 포격도발	18 (2)	—	18 (2)	16 (2)	2	—	

주: ()는 무공보국수훈 경합 등록 인원임

자료: 국가보훈부

□ 개정안은 상이등급의 등급과 구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조의4에도 불구하고 공상군경 등이 직무수행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시 직무의 성질 및 상황, 현재 시점의 사회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고유한 판정기준 및 절차가 적용되도록 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임.

□ 다만, 개정안은 별도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당시 직무의 성질 및 상황, 현재 시점의 사회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을 통한 상이등급 판정 시 해당 사유들이 어느 정도 고려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사유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경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별도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결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현행 법령에서와 같이 정부의 의지에 따라 형성된다는 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됨.

□ 개정안의 논의와는 별도로, 국가책임 강화라는 개정안의 입법취지 달성을 위해 “요건심사” 단계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공무관련성 추정제도’ 도입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무관련성 추정제도’는 유해·위험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특정 질병에 걸리는 경우 국가가 직무수행과 질병과의 연관성을 추정하여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입증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로, 미국·캐나다 등에서 소방관의 특정 질병에 대해 공무상 추정제도가 제도화되었으며, 최근 우리나라도 군인·공무원(국방부·인사처) 재해보상에서 공무상 재해 추정제도를 시행 중임.

- 부상은 사고 원인이 명확하여 직무관련성 입증이 비교적 용이한

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질병은 수년에 걸쳐 발병하고 유해물질 노출이 누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이 이를 의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운 현실임.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공무상 추정제도가 도입될 경우, 요건심사 단계에서 현재와 같이 신청자가 진단·치료기록 등을 제출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국가 수호 또는 생명 보호 관련 사건)이 충족될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실익이 있음.⁷⁾

< 공무관련성 추정제도 >

- ▶ **(인사혁신처)** 뇌·심혈관, 직업성 암, 정신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질병에 대해 공무 관련성 추정제도 23.6월부터 시행 중(「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⁸⁾)
 - ▶ **(국방부)** 뇌·심혈관, 직업성 암, 정신질환, 근골격계질환, 소음성 난청 등 질병에 대해 공무관련성 추정제도 '25.1월 시행(「군인 재해보상법」 개정⁹⁾)
 - ▶ **(국외사례)** 미국·캐나다·호주는 소방관 관련 질병을 공상으로 추정하는 사례가 이미 제도 화됨.
- * (소방관) 미국, 캐나다, 호주 : ‘암’ 등의 질병, 최소 근무연수 규정 충족 시 공상 추정

7) 공무와 질병간의 의학적 관련성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국가 수호 또는 생명 보호 관련 사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실익이 있음.

8)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이 경우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공무원의 직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재직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9)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16.]

□ 개정안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현재 등급체계에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등급판정이 가능하고, 실제로 다수의 사례에서 등급이 부여되고 있으며, 다른 정신질환이나 신체장애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입법하는 것보다는 “요건심사 단계”에서 공무상 추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¹⁰⁾

10) 개정안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우선 이번 개정안 발의의 계기가 된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은 “상이 등급 심사”가 아니라 “요건심사” 단계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을 받은 사례로, 현재 “요건심사”에서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현행 상이등급 체계 및 기준에 따라 등급판정이 가능하고, 실제로 대부분(최근 5년간 73%)의 사례에서 등급이 부여되고 있어 입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또한, 개정안과 같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을 위한 별도의 등급체계를 마련하여 적용할 경우 다른 정신질환이나 신체장애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부칙

- 개정안 부칙은 법 시행일을 정하고, 개정되는 상이등급 판정 특례를 개정안 시행 전에 발생한 전투 또는 직무수행에 참여한 자에게도 소급적용하려는 것임.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이등급 판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참여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 안 부칙 제1조는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법 시행을 위해서는 시행령 정비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 개정안에 따라 별도의 상이등급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경우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훈급여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다는 점에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의 지급시점이 명확할 필요가 있으므로,
- 법 시행일을 특정한 날짜(○월 1일)로 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안 부칙 제2조는 별도의 상이등급 특례를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전투 또는 직무수행에 참여한 군인 등에게도 적용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된 적용 대상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전투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은 군인 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종전 작전 등 전투 또는 직무수행에 참여한 군인 등에게 개정 조항을 적용함을 명확히 하는 부칙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10

참고1

서해수호 요건심사 및 상이등급 판정 현황 * 2025.8월 기준

□ 'PTSD' 관련 요건 심사 현황

구분	요건심사			
	계	해당	비해당	진행 중
계	54	41	5	8
제1연평해전 (‘99.6.15)	13	3	2	8*
제2연평해전 (‘02.6.29)	9	7	2	-
천안함피격 (‘10.3.26)	30	29	1	-
연평도포격 (‘10.11.23)	2	2	-	-

* 제1연평해전 진행 중 8명은 '25.2월 심사에서 요건 비해당 의결되어 재심사 진행 건임

□ 'PTSD' 상이등급 판정현황

구분	총계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
요건 인정	41	3	7	29	2
등급 판정	35	1	5	29	-
등급 미부여*	6	2(진행중)	2(등급미달)	-	2(등급미달)

* 등급 미부여자 중 등급미달자(4명)는 다른 상이처로 등급판정을 받아, '11년도 이후 PTSD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음 ⇒ 총41명 중 39명이 등급판정받아 국가유공자 등록

참고2

상이등급 판정현황

* (서해 수호) PTSD 등급판정율: 85% ** 그 외 상이 포함 시 95%

구분	구분	계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
일반 PTSD	등급판정	62	5	20	11	18	8
	기준미달	23	3	4	9	3	4
	합 계	85	8	24	20	21	12
	등급판정률	73%	63%	83%	55%	86%	67%
일반 상이	등급판정	23,980	6,011	4,583	4,557	4,304	4,525
	기준미달	19,805	4,372	3,903	4,079	3,560	3,891
	합 계	43,785	10,383	8,486	8,636	7,864	8,416
	등급판정률	55%	58%	54%	53%	55%	54%

※ 신규 및 재확인 대상자 기준

참고3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상이등급 구분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시행령 별표 3)	장 애 내 용 (시행규칙 별표 4)
1급1항	4201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또는 식사거부나 이물질 섭취행위 등으로 자제력이 완전 상실되어 항상 감시상태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
1급3항	4202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4203	고도의 정신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고도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하거나 치매·환각망상·발작성식장애의 다발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
3급	4204	정신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급	4205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어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급	4206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어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6급 1항	4207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어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2항	4208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어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7급	4209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정신장애로 1년 이상 약물치료 후에도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어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